(신) 운 영 위 원 회 규 정

인 상 고 등 학 교

인상고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제정 2000년 6월 27일 규정 제 1 호 개정 2003년 9월 18일 규정 제 2 호 개정 2006년 2월 27일 규정 제 3 호 개정 2012년 2월 17일 규정 제 4 호 개정 2015년 4월 8일 규정 제 5 호 개정 2016년 4월 1일 규정 제 6 호 개정 2022년 4월 8일 규정 제 7 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위원회는 인상고등학교 운영위원회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인상학원 정관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 전라북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상고등학교 운영위원회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4.01.)

제 2 장 위원의 신분

- 제3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 후 1기(2년)는 쉬어야 한다. (개정 2016.04.01.)
 - ②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에 시작한다. (개정 2016.04.01)

제4조(위원의 자격) ① 삭제 (2003. 9. 18)

- ②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은 우리학교 학부모와 우리학교 교원으로 한다. (개정 2016.04.01.)
- ③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 ④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 ⑤ 3항으로 변경 (개정 2016.04.01.)
- 제5조(위원의 의무) ①위원은 무보수의 봉사직으로 하며, 수당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04.01.)

- ②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개정 2012.02.17.)
- ③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 · 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 정 2012.02.17.)
- ④학부모 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안 된다. (개정 2012.02.17.)
- ⑤교원위원은 사전 통지된 안건에 대하여 가능한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회의에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을 교직원 전체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16.04.01.)
- 제6조(위원의 퇴직) ①학교운영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 한다.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 말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개정 2016.04.08.)
 - 1. 학부모위원은 학생이 졸업과 진학, 교원위원은 교원의 전보발령으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 당연 퇴직한다. (개정 2016.04.01.)
 - 2. 위원은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다만, 다음 사항은 3회 불참에서 예외로 한다.
 - 가. 병으로 인하여 거동이 어려울 때
 - 나. 가족의 경조사로 인하여 참석이 어려울 때
 - 다. 공무나 생업과 관련하여 장기 여행중일 때
 - 라. 기타 운영위원회가 특별히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 3. 학부모 위원 및 지역 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 경력 등의 주요 내용에 거짓이 발견된 때 (개정 2012.02.17.)
 - 4. 삭제 (2016.04.01.)
 - ② 학교운영위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사직원을 제출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위원장이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6.04.01.)

제 3 장 위원의 선출

- 제7조(위원의 정수) ①운영위원회의 위원은 6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3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2명, 지역위원 1명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4.1.)
 - ② 위원 정수는 해당년도 3월 1일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12.02.17.)
 - 제8조(선출일)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끝나는 날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끝나는 날 전까지 선출한다. (개정 2012.02.17.)

- 제9조(선출관리위원회) ①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 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 홍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 ③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운영위원에 입후보하지 않은 학부모 3명으로 하되, 학부모의 추천으로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고, 그 위원장은 학부모 선출관 리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또는 호선)로 선출하며 선거일정 및 선거사무를 총괄한다.
 - ④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원위원에 입후보하지 않은 교원 3명으로 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 받아 구성하고, 그 위원장은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서 무기명 투표(또는 호선)로 선출하며 선거일정 및 선거사무를 총괄한다.

제10조(학부모위원 선출)

- ①(선출방법) 학부모위원은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대의절차에 따라 간접 선출 한다. (개정 2016.04.01.)
- ②(공고)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 ③(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7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 하여야 한다.
- ④(선거홍보)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홍보물을 작성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 ⑤(투표) 선거 당일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실시한다.
- ⑥(당선자 결정) 당선자는 다수 특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입후보자가 정수와 같을 때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 다.
- ⑦ (선거인 명부 작성 시)
- 1. 직선의 경우 학생이 1인 이상일 때 부·모중 1명에게 투표권이 있음.
- 2. 간선의 경우 학년 간선일 때 자녀의 학년이 다른 경우 부·모 중 1명이 투표 권을 각각 행사할 수 있음.
- 3. 학생이 부모와 동거하지 않고 조부모와 동거중일 때 조부모 중 1명에게 투표권이 있음.
- 제11조(교원위원 선출) ①(선출방법)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개정 2016.04.01.)
 - ②(공고)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 ③(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7일 전까지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04.01.)
- ④(투표)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1인 1기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간제 교사의 선거권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정한다.
- ⑤(당선자 결정)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입후보자가 정수와 같을 때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 제12조(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으로 선출한다. (개정 2016.04.01.)
- 제13조(보궐선거) 위원이 결원될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2016.04.01.)

제 4 장 운영위원회 조직

- 제14조(임원) ①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6.04.01.)
 -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 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 ⑤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02.17.)
 - ⑥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02.17.)
 - ⑦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장기 출타 및 부재 시 학교장 또는 연장자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참석자중 최연장자의 주재로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안건을 자문할 수 있다.

- 제15조(소위원회) ①운영위원회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자문한기 위하여 학교급식소위 원회를 두며, 그밖에 필요한 경우에 예·결산소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02.17.)
- ②소위원회는 해당 안건의 예비심사를 수행하며 심사가 끝날 때까지 존속한다.
- ③소위원회 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하되 위원장이 지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임 된 소위원회의 위원은 다른 소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있다.
- ④소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되 소위원회에서 각각 호선하며 간사는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소위원회의 위원 수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재적위원 3분의1을 넘지 못한다.
- 제16조(학교내외의 자생 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자율적으로 운영하며(또는 운영위원회에 산하단체로 두며)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 제17조(사무처리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실장을 간사로 두며, 학사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교무부가 협조한다.

제 5 장 위원회의 기능

- 제18조(심의 또는 자문사항) ①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1호 내지 17호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한다. (개정 2022. 03. 01.)
 -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 개정 (개정 2012.02.17.)(개정 2022.03.01.)
 - 2. 학교의 예산 및 결산
 -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
 -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 추천 (개정 2012.02.17.)
 - 7. 학교급식
 - 8.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 9. 학교운동부의 구성 · 운영
 - 10.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 1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 12. 교복 및 체육복, 졸업앨범, 현장체험학습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16.04.01.)

- 13.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 1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15. 기타 학교운영에 관하여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개정 2012.02.17.) (개정 2022.03.01.)
- 16. 학교 운영지원비와 학교 발전기금의 조성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신설 2012.02.17.)
- 17.. 개방이사 선임대상자 추천 (법인요청시) (신설 2022.03.01.)
 - 가. 법인으로부터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 추천 요청시 학교운영위원장은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 나. 법인으로부터 감사 중 1인의 선임 대상자 추천 요청 시 학교운영위원장은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 ②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가 심의또는자문한 사항을 최대한 존중하여 학교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또는자문사항이 법령, 조례 또는 운영규칙에 위반되거나 이를 이행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교장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재심의 또는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2016.04.01.)(개정2022.03.01.)
- ③1항제12호의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자문할 때에는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문하여야 한다. (신설 2012. 02. 17.)
- 1. 학교홈페이지
- 2. 학부모 총회
- 3. 가정통신문
-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 ④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을 자문할 때에는 위원장은 학생대표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2. 01. 25)
- ⑤제1항제10호에 따라 학생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건의할 경우 학생대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의하여야 한다.(신설 2012, 02, 17.)
- 1. 학생 설문조사
- 2. 대의원회
-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 ⑥ 삭제 (2016. 04. 01.)
- 제19조(학교운영지원비 및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①위원회는 학교의 운영을 지원 하기 위하여 학부모회의 동의를 얻어 학부모로부터 일정액의 학교운영지원비를 각출 받을 수 있다.

- ②위원회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학업보호를 받는 자, 수업료 감면 기준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자, 기타 생활이 어려운 회원에게는 학교 운영지원비를 징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③위원회는 학교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부금을 받아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다만, 학교발전기금은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 요령"에 따라 조성·운용하여야 한다.
 - ④제1항의 학교운영지원비 및 제3항의 학교발전기금(이하 "지원비 등"이라 한다)의 규모, 모금방법, 사용처 등은 위원회가 학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지원비 등 조성 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운영지원비에서 교직원 복지향상을 위한 수당지급액은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 ⑤지원비 등에 대한 회계업무는 학교장에게 위탁하여 행하되, 학교발전기금을 별도회계를 통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6.04.01.)
 - ⑥지원비 등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운영결과를 공개한다.

제 6 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 제20조(회기)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4월 중에 개최한다. (개정 2012.02.17.)
 - ② 위원의 임기 개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의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개정 2016.04.01.)
 - ③ 임시회의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 한다. (개정 2016.04.01.)
 - ④ 회기는 집회 즉시 의결로써 이를 정하고 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 할 수 있다.
 - ⑤회의는 개최 예정일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이 필요한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6.04.01.)
 - ⑥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하되 회의 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①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하는 때에는 일과 후 또는 주말 등 운영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04.01.)
- 제21조(안건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자문할 안건은 학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개정2016.04.01.)
- 제22조(의사 의결·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2016.04.01.)

- 제23조(회의 공개의 원칙) ①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2016.04.01.)
 - ②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이나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 교사, 학생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2012.02.17.)
- 제24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자문과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학교장에게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개정2012.02.17.)
- 제25조(회의록 작성 등) ①운영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개정 2012. 02. 17.)
 - ②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2. 02. 17.)
 -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자문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016.04.01.)
 - 3.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위원회의 활동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가정통신문이나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차기회의 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02. 17.)
- 제26조(건의사항 처리) ①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8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 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 야 한다. (2016,04,01.)
 - ②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 ③건의서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 ④운영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건의인의 직접진술을 들을 수 있다.
 - ⑤운영위원회에서 자문하여 채택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 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결과를 운영위원회 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⑥위원장은 건의의 처리 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7 장 자문사항의 시행 등

- 제27조(시행 의무 등) 학교장은 제18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시행한다. 다만, 학교운영상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 이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40.01.). (개정 2022.03.01.)
- 제28조(시정명령)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 없이 자문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거나 심의 또는 자문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청의 시정명령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40.01.), (개정 2022.03.01.)
- 제29조(운영 경비)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청의 예산관련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6.04.01.)

제 8 장 규정의 개정

- 제30조(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1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개정 2016.04.01.)
- 제31조(공고)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7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04.01)
- 제32조(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개정 2016.04.01.)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최초의 운영위원회 규정은 교직원전체회의의 의결로 학교장이 정한다.

제3조(경과 조치) ①최초의 학교운영위원회 임기는 위원으로 선출된 때부터 2002년 3월 31일자로 한다.

②최초의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시 긴급을 요하는 상황이 있을 때에는 규정에 의한 선출일은 학교의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③운영위원회 자문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제6조 ①항에 의한 결원이 3명 이하이면 학부모 반 대표회의에서 추천을 받아 운영 위원회에서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선출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2003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2006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2012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2022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